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 1. 총액임기제 변동사항 반영(안 제78조, 별표8)

#### 가. 개정 이유 및 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181명(8급 18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3명(8급 3명)에 대한 직렬 오기를 업무 특성에 맞는 공업·시설 직렬로 정정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치안 현장 대응 역량 제고